

“시급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연구자들도 관심갖고 참여를”

생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많은 사람이 유전병, 암,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이 완전히 퇴치되고 기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기대에 못지 않게 첨단 생명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지도 모를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걱정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바가 되었으며, 인간복제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리라는 우려도 증대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유전정보가 점차 규명되고 나아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의 유전정보 보호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의 윤리성과 안전성 문제, 생명에 대한 조작적 관점으로 인한 잘못된 생명관과 유전자결정론의 확산, 생명특허에 대한 논란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생명과학 발전에 따르는 이러한 윤리적 문제는 이제 먼 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연구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생명과학분야의 연구가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며, 특히 생식기술분야는 세계 최첨단인 실정이



황 상 익
(서울대 의대 교수)

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시민들이 국내의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행해지는 생명과학연구들 중 어떤 것들은 윤리적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가 우려하며, 안전에 대한 조치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 자신들도 생명과학연구에 대한 충실한 윤리적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또 그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을 사서 연구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유럽선 관련법 이미 시행

외국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필두로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관련 법들이 제정, 시행되고 있거나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

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983년에 『유전공학육성법』(현재는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여 제15조에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막연한 조항을 두었을 뿐 생명윤리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과 연구자들을 보호하며 안심시키고, 또 그럼으로써 바람직한 생명과학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생명윤리에 관련된 법, 그 가운데에서도 생명윤리 문제를 총괄하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이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 법은 그 목적과 성격상, 시민들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바람직한 생명과학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은 시민과 연구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절차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그 필요성과 우리나라 생명과학의 발전 수준, 그리고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때늦은 바가 없지 않지만,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생명윤리기본법』의 틀이 준비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이 위원



회가 제대로 된 법의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과 연구자들이 이 위원회에 모든 사항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위원회도 그러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리위, 국가기구로 설치해야

생명윤리문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생명윤리기본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1)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아직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거니와, 생명윤리와 시민의 인권을 보장, 신장하고 그럼으로써 바람직한 생명과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총괄하는 생명윤리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선결조건이다.

2) 인간개체 복제 등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하거나 규제해야 할 생명과학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률이 영국·독일·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는 막연한

조항만을 두고 있어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구자들도 이러한 생명윤리 관련 법의 제정과 시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구와 활용 : 『생명윤리기본법』에는 인간개체 복제를 포함하여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하거나 규제해야 하는 생명과학 연구와 시술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연구와 활용에 필요한 신청과 승인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때의 법적, 행정적 제재방법 등을 규정해야 한다.

3) 유전자치료에 관한 사항 : 유전자치료는 현재까지 그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실험단계에 있으며 윤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 또는 허용되는 유전자치료의 범위와 승인절차 등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4) 유전적 프라이버시 보호와 유전적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 유전정보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유전자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막기 위하여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하고 유전적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생명윤리기본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해야 할 생명특허에 관한 사항 : 인간개체 복제 등과 같이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해야 하는 생명과학기술과 산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금지해야 한

다. 그밖에 윤리적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특허 부여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생명특허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시에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시민들의 피해 우려를 최소화

다시 강조하거나 사회적인 합의로 생명과학 연구와 활용의 적절한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은 시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시민들의 우려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화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시민들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당당하게 연구를 하도록 하고 또 그럼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자신들의 연구와 그 활용이 공익(公益)에 부합하며 기여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연구를 제약, 억제하리라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생명과학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연구자들은 『생명윤리기본법』을 비롯하여 생명윤리 관련 법의 제정과 시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필자는 그것이 ‘포스트게놈 시대’ 생명과학 연구자들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㉞